

장기요양급여 이용계약에 관한 사항

1. 이용대상 : 65세 이상 노인 또는 65세 미만으로 노인성 질병으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일상생활 수행능력에 지장이 있는 자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의거 등급판정을 받은 자 판정을 받은 장기요양 수급자를 대상으로 한다.

2. 이용방법

1) 급여종류는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복지용구로서 노인장기요양보험법 및 노인복지법의 절차에 따라 서비스 및 복지용구 제공.

3.이용계약

1) 계약기간: 계약기간은 장기요양보험 인정 유효 기간으로 하며, 장기요양등급의 변동과 유효기간 만료에 따라 재계약을 실행한다.

서비스 계약은 장기요양보험 인정자 및 자녀를 포함한 법적 대리인도 계약이 가능하며, 2부 작성하여 각각 1부씩 보관한다.

2) 계약시 구비서류

- ① 장기요양인정서 사본
- ② 표준장기요양이용계획서 사본
- ③ 복지용구 급여확인서 사본
- ④ 신분증 (필요시)

3) 신청자가 기초생활수급권자 이거나 의료수급권자인 경우 계약체결 전 반드시 서비스 이용자 주소지 관할 시·군·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.

4) 계약목적: 혼자서 일상생활을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은 분들에게 방문요양, 방문목욕, 복지용구등의 급여를 제공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자 함을 목적으로 한다.

5) 월 이용료 및 그 밖의 비용 부담액 : 월 이용료는 본인 일부부담금과 비급여로 구성되며 그 세부 내용은 아래와 같다.

1) 재가급여 월 한도액 (2025.01.01. 기준)

등 급	1 등급	2 등급	3 등급	4 등급	5 등급
월 한도액	2,306,400원	2,083,400원	1,485,700원	1,370,600원	1,177,000원

2) 장기요양서비스 수가 및 본인부담요율 (2025.01.01. 기준)

급 구 여 분	분 류 번 호	분 류	금액(원)
방 문 요 양	가-1	30분 이상	16,940
	가-2	60분 이상	24,580
	가-3	90분 이상	33,120
	가-4	120분 이상	42,160
	가-5	150분 이상	49,160
	가-6	180분 이상	55,350
	가-7	210분 이상	61,670
	가-8	240분 이상	68,030
방 문 목 욕	나-1	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차량 내 목욕)	86,480
	나-2	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한 경우(가정 내 목욕)	77,970
	나-3	방문목욕 차량을 이용하지 아니한 경우	48,690

(비용의 부담)

구 분		금액(원)	내 역
월 이용한도액	공단부담금	85%	서비스이용자의 등급에 따라서 비급여를 제외한 100%중 85% 보험공단으로부터 수령.
	본인부담금	15%	일반 장기요양 수급자
		9%	건강보험료 순위 25%초과 ~50% 이하
		6%	의료급여수급자, 건강보험료순위 25% 이하
		0%	기초생활수급자

6) 기타 비용 부담

- ① 이용자의 거주지에서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 사용하는, 수도, 가스, 전기, 전화 등의 비용은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.
- ② 병원동행 등으로 교통기관을 이용했을 경우, 서비스요원(요양보호사)의 교통비는 이용자의 부담으로 한다.

4. 계약해지 : 다음 각 호의 요건에 해당될 경우에는 대상자 또는 보호자와의 계약은 해지할(될) 수 있다.

- 1) 서비스 이용자의 생명이 위험하거나 사망하였을 때
- 2) 서비스 이용자의 건강진단 결과 법정 전염병 소지자 또는 보균자로 판정될 때
- 3) 3회이상 본인부담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고 연체하였을 때
- 4) 일시적인 병원입원, 시설입소 등의 경우에는 이 계약효력을 정지 할 수 있다.

- 5) 신체 및 정신적 질환의 악화로 인해 케어서비스 제공에 어려움이 발생 되거나
기본적인 일상생활 수행이 전적으로 시설의 케어만 의존하게 되었을 때
- 6) 어르신의 건강과 관련한 중요한 정보를 고의적으로 숨긴 것이 드러났을 때